

Q6.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빙나요?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유치원운영위원 업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 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학부모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리

● 유치원운영 참여권

-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건의

●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유치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

● 보고 요구권

-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
-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퇴직 결정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알선 금지
- ※ 운영위원회 의결로 퇴직 결정 자격 상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유치원 운영위원회 이렇게 참여하세요!

2024년 새내기 학부모님을
유치원운영위원회로 초대합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유치원을 만듭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란?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유치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입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공·사립의 유치원에 설치·운영합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학부모대표, 교원대표로 구성됩니다.
- 단설유치원의 경우 유아수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수도 다릅니다.

유아수	위원수
100명 미만	5 ~ 8명
100명 이상	9 ~ 11명

-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과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학부모와 교원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2.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자격이 있나요?

학부모위원 해당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해당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Q3. 선출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도 가능)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유치원장이 위촉

Q4.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1년 또는 2년(규정으로 정함),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임기개시일 : 4월 1일
- 보궐위원의 임기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 1년, 연임 가능

Q5.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심의기능을,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자문기능을 합니다.

● 주요역할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6)

-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사립유치원 제외)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제외)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